# 사내벤처운영규정

제정 2018.10.4 개정 2020.12.30 [신성장사업처 신사업개발부 042-600-8273]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공사 또는 임·직원 (이하 "직원"이라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으로 사내벤처를 추진하는 경우 그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조직문화 정착과 신사업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2조(적용범위) 사내벤처를 지원하고 육성 및 관리하는 제반 사항은 법령, 정관, 사규 및 이사회 의결로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내벤처 활동"이라함은 임직원이 신규 사업을 개발하거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 개발, 마케팅, 경영관리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2. "예비사내벤처팀"이란 공사의 임직원이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선정된 팀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내벤처팀으로 선정되기 전까지 운영되는 팀을 말한다. <신설 2020.12.30>
- 3. "사내벤처팀"이란 공사의 임직원이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공사로부터 사업성, 기술성, 비즈니스 모델 등을 사업화하기 위해 자율적·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 4. "리더"는 아이디어 제안자 또는 해당 벤처 사업기획자를 말한다.
- 5. **"주관부서"**란 사내벤처팀의 선정 및 행정지원, 타부서와 업무연계등 사내벤처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부서 또는 인력을 말한다.
- 6. "평가위원회"란 사내벤처 지원대상 추천, 중간평가, 최종평가, 협약의 변경·해약, 문제과제 등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 7. "심의위원회"란 사내벤처 지원대상 최종결정, 최종평가결과 심의, 이의신청 처리 및 사내벤처팀 지원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 8. "중간점검"이란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기술구현 및 콘셉트, 시장성·사업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9. **"최종평가"**란 조기완료 또는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대하여 '독립분사', '사내사업화', '단순 완료 또는 실패' 여부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10. **"벤처기업"**이라함은 사내벤처팀이 협약기간 동안 사업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분사하여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0.12.30>
- 11. **"성과보상금"**이라함은 영업성과 또는 운영성과 발생 시 최종평가를 통해 결정된 지급액을 말한다. <신설 2020.12.30>
- 12. **"오픈사내벤처"**란 내부직원과 외부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사내벤처의 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0.12.30>

##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주관부서의 역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내벤처 공모 및 접수
- 2. 벤처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 3.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른 심의위원회 상정
- 4. 사내벤처팀에 대한 중간점검, 최종평가 관련 업무
- 5. 사내벤처팀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사내벤처 홍보 및 활성화 유도
- 7. 기타 사내벤처창업제도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5조(사내벤처팀 이행사항) 사내벤처팀은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 사업추진계획에 명시된 계획의 성실한 이행(사업목표의 달성 등)
- 2. 관련 법률, 공고, 규정의 숙지와 준수
- 3. 공사에서 시행하는 사내벤처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 참여
- 4.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자료, 점검 및 평가, 개선 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제6조(평가위원회)** ① 평가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20.12.30>

- 1. 사내벤처팀 선정을 위한 신청자격 확인, 제출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평가
- 2. 사내벤처팀 중간점검. 최종평가
- 3. 사내벤처팀 사업추진계획서상의 사업비 조정
- 4. 협약의 변경·해약, 문제과제 등 평가
- 5.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 6. 기타 사업관리 등을 위해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 ③ 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④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는 평가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 2. 비밀유지 서약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 3.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⑤ 공사는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① 사내벤처제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문제가 발생한 사내벤처팀의 제재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사장이 최 종 결정

하다.

- ② 심의위원회는 5인 내외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 1. 사내벤처팀 선정 확정 및 사업지원금 조정
- 2. 사내벤처팀 협약 중단 평가결과 확정
- 4. 사내벤처팀 최종평가결과 및 사업비 정산금액 확정
- 5. 사내벤처팀의 이의제기에 따른 평가결과 확정
- 6. 사내벤처팀 참여자의 성과기여도에 대한 평가 및 특별포상 관련 사항
- 7. 분사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 설정과 지원 및 회수 건 <신설 2020.12.30>
- 8. 기타 사내벤처와 관련하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내벤처 담당본부장으로 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⑤ 심의위원의 자격상실 기준은 제6조 제4항을 따른다.
- ⑥ 위원회의 안건, 절차, 사무처리 등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⑦ 합리적인 이유로 심의불복 의견이 있는 경우 사내벤처 주관부서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경우 30일 이내 해당 사내벤처팀의 변론 기회 제공과 이에 대한 재심의가 진행되도록 한다. <신설 2020.12.30>

## 제3장 신청 및 평가

제8조(사내벤처 운영 분야) ① 사내벤처를 운영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사의 인프라 및 직원 또는 공사의 보유기술 등을 활용한 사업화 가능분야
- 2. 공사의 기존 사업 분야와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
- 3. 신사업 분야로서 공사 전략 목표와 부합하고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 4. 개방형 혁신 차원에서 민간 인프라와 공사 직원 개인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 추진이 가능한 사업 <신설 2020.12.30>
- 5. 국가경쟁력, 지역 경제 및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분야 <신설 2020.12.30>
- 6. 공사 경영시스템 혁신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이 가능한 분야 <신설 2020.12.30>
- 7. 그 외 공사가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
- 8.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사업 분야 <신설 2020.12.30>
- ② 제1항의 사업 중 다음 각 호는 사내 벤처로 인정될 수 없다. <신설 2020.12.30>
- 1.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업
- 2. 공사의 기업이념 또는 경영목표에 부적합한 사업

제9조(신청자격) ① 신청자격은 공사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자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12.30>

- 1. 신청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인사규정」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2. 제 15조에 의해 사내벤처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12.30>
- ② 공사 직원이 주축이 되어 2인 이상의 팀으로 신청할 경우, 외부인도 함께 사내벤처 공모에 오픈형 예비 사내벤처로 참여할 수 있으며, 내부 인원은 최대 3인 이하로 한다. 단, 해당 외부인이 특수 관계자인 경우 참여가 불가하며 반드시 신청이력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공사 직원이 지원팀의 대표가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30>
- ③ 규정 이외의 구체적인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은 해당 공고에 따른다.
- 제10조(모집공고) ① 사내벤처 관련 신청 및 접수는 별도 공고에 따르며, 횟수 및 시기는 공사의 운영 현황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②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개요
- 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3. 지원 규모 및 내용
- 4. 사내벤처팀의 의무 및 역할
- 5. 신청 절차, 방법 및 기간
- 6. 평가 절차 및 선정 방법
- 7. 유의사항

- 8.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참고사항
- 제11조(신청 및 접수) 사내벤처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사내벤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내벤처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그 부속서류 (별지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서식)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 제12조(아이디어 평가) <신설 2020.12.30> ① 주관부서는 예비사내벤처 신청서에 대한 충족요건, 사업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 서면 또는 발표평가 등으로 추진할 수 있다.
- ② 평가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1. 사업계획의 적합성
- 2. 사업계획의 사업성
- 3. 사업성공시 기대효과
- 4. 창업자에 대한 평가
- ③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사업계획 평가표상의 개별 평가 항목 중 최하점(F)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심위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와 평가과정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및 지원범위 내에서 예비사내벤처팀을 선정한다.
- ⑤ 예비사내벤처는 신속하 추진을 위해 아이디어 평가만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13조(예비사내벤처팀의 구성) <신설 2020.12.30>

- ① 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자는 사내벤처팀 선정을 위하여 예비사내벤처팀을 구성하고, 사내벤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예비사내벤처팀은 최소 공사 내부 직원 1명 이상의 팀으로 구성하며, 외부인이 참여하는 오픈형 예비사내벤처팀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예비 사내벤처 팀은 사내벤처팀 선정을 위하여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내벤처 신청서와 그 부속 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사내벤처팀 선정) <신설 2020.12.30>

- ① 주관부서는 예비사내벤처팀이 제출한 사내벤처 신청서에 대한 충족 요건등을 검토한 후, 서면 및 발표평가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평가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0.12.30>
- 1.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구체성
- 2.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 혁신성
- 3. 목표시장의규모 및 성장 가능성, 구체적인 비즈니스모델 제시
- 4. 수출 또는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글로벌 진출 전략의 구체성, 해외 시장 및 경쟁사 분석 여부
- 5. 창업자의 도전의지, 기업가 정신, 팀원 구성의 적절성 등
- ③ 평가방법은 공사의 상황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예비사내벤처팀의 IR(Investor Relations) 등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 ④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평균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와 평가과정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및 지원범위 내에서 사내 벤처팀을 최종 선정한다.
- ⑥ 선정된 사내벤처팀의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심의의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단, 연간 평가를 통해 중단 여부와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0>

#### **제15조(협약)** <개정 2020.12.30>

- ① 공사와 사내벤처팀은 벤처창업활동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협약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30>

- 1. 대상 사업의 업종 및 대상 기술
- 2. 보육 기간 및 법인화 예상 시기
- 3. 공사의 지원 사항 및 이에 대한 허여 범위
- 4. 대표자 및 팀원의 의무, 책임 및 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 5. 사내벤처팀 운영 자금 조달 계획
- 6. 공사의 지워금 및 투자금 회수
- 7. 외부인 팀원 참여 시 역할
- 8.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협약체결을 위하여 사내벤처팀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사내벤처 협약 신청서(별표 제3호)를 포함한 협약 일체의 서류(별표 제3-1부터 제3-4호까지의 서식)를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 ④ 협약은 공사와 사내벤처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을 위해서는 1개월 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 ⑤ 공사는 사내벤처팀이 과제수행 중 제품화 과정, 시장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 협약의 중 지 또는 해약을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서 협약의 중지 또는 해약을 요청한 경우, 적절한 검증절차와 사내벤처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 제16조(선정취소) <개정 2020.12.30>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사내벤처팀 또는 사내벤처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 1. 제출한 관련 서류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2. 공사와 협의 없이 주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 3. 공사에서 지원한 자금, 시설 등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4. 예비사내벤처팀 또는 사내벤처팀의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 5. 사내벤처 구성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신설 2020.12.30>
- ② 협약 이후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협약은 자연적으로 해약된다.
- ③ 공사는 제 1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내벤처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2.00>
- ④ 사내벤처 대표자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해 사내벤처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의는 심의 위원회에서 하도록 한다. <신설 2020.12.30>
- 1. 더이상 사업계획의 달성이 어렵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로 기술상 구현이 어렵다고 전문가들의 소 견을 받은 경우
- 2. 시장 내 해당 고객들의 구매 의지가 없다고 조사 분석한 경우
- 3. 일신 상의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 4. 기타 사내벤처의 추진이 불가하다고 사내벤처 구성원들의 합의가 문서로 결의된 경우
- ⑤ 사내벤처 철회 시까지 소요된 자금에 대해서는 합당한 금액 사용 여부를 소명자료로 선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금 사용 여부가 합당하지 않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일련의 과정은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신설 2020.12.30>

### 제4장 운영 및 관리

제17조(예비사내벤처팀 운영) 예비사내벤처팀 대표는 사내벤처 신청서 보완을 위해 경영 자문, 기술 자문, 시장 조사, 외부 교육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타당할 경우 주관부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 제18조(사내벤처팀 운영)

- ① 사내벤처팀으로 확정되면 팀을 구성하고 참여자를 주관부서 산하의 별도조직으로 발령 조치하여야 한다. 단, 사내벤처가 선정된 경우 사내벤처 담당 부서장은 조직 · 정원 담당 부서장을 통해 기획재정 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으며, 사내벤처팀을 신속하게 구성한다. <개정 2020.12.30>
- ② 사내벤처 구성원의 복무에 관하여 인사, 보수, 복지 등은 공사 내규를 준용한다. 단, 사내벤처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내규의 범위 내에서 근무 형태 및 근무 장소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있다. <개정 2020.12.30>
- ③ 공사는 사내벤처팀에 자금, 인력, 사무공간, 창업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20.12.00>
- ④ 사내벤처팀은 예산의 별도관리를 시행하고 사업계획 내 예산집행은 공사 내 사규를 따른다. <개정 2020.12.30>
- ⑤ 사내벤처팀의 사업 철수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가 아니면 최종평가 완료 전에는 전보하지 않는다.
- ⑥사내벤처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공사에 귀속되며, 비용과 수익에 대한 처리는 공사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30>
- ⑦ 사내벤처 협약 기간 공사의 운영 자금으로 생긴 특허권, 실시권 등은 공사 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도록 한다. <신설 2020.12.30>
- ⑧ 사내벤처에서 발생하는 모든 계약에 대한 당사자는 공사로 한다. <신설 2020.12.30>

### 제19조(경영·기술 등 지원)

- ① 공사는 사내벤처로 선정된 직원에 대하여 업무인수 인계기간 및 창업 준비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중 사내벤처에 대하여 사무공간 및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일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 ② 주관부서는 사내벤처팀의 행정적, 재무적 업무에 대하여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공사는 사내벤처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술 관련 장비 및 인력에 대한 지원할 수 있다.
- ④ 공사는 사내벤처팀이 공사의 핵심 장비, 시설, 지적재산권, 보유 기술 등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합당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부과 시작 시점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사용료 금액 결정 등은 외부 전문가에 평가 의뢰해 파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 ⑤ 공사는 사내벤처팀의 기타 경영 및 기술자문 요청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⑥ 공사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금에 대해서는 사내벤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 1. 용역비, 실험 등의 연구비, 장비구입비, 원재료비, 교육훈련비, 인쇄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통신비 등 사업과 관련된 제비용
- 2. 기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비용
- ⑦ 사내벤처 지원에 대해서는 공사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을 정하도록 한다.

### 제20조(사내벤처의운영 실적 보고) <신설 2020.12.30>

- ① 사내벤처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 단계별 추진현황 및 자료(월간보고)
- 2. 예산집행내역(분기보고)
- 3. 영업실적에 관한 사항(분기보고)
- 3. 결산 및 예산에 관한 사항(반기보고)
- 4. 기타 중요한 사항(월간보고, 수시보고)

- ② 보고 시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1. 월간보고: 다음달 5일까지
- 2. 분기보고: 분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 3. 반기보고: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 4. 연간보고: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 5. 수시보고: 담당부서 요구 시
- ③ 담당부서는 사내벤처에 대한 경영상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 회계서류등의 경영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21조(중간점검) ① 공사는 사내벤처팀의 과제 수행 경과에 대하여 6개월 단위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점검위원은 과제의 유형 및 내용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점검은 사내벤처팀 사업계획 중간점검 평가표(별표 2)에 의해 검증한다.
- 1. 사업계획 타당성(목표 명확성, 아이템 적정성, 시장규모 및 성장성)
- 2. 사업화 기대효과(공사 본업 활용 정도, 공사 이미지 제고 효과, 제품 또는 서비스 기여도)
- 3. 기술 및 아이디어 평가(혁신성, 상용화 가능성, 공사 사업과의 관련성)
- 4. 수행자 평가(지식 및 경험, 확신 및 열정, 능력 및 성실성)
- ④ 점검결과는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계속추진', '조기완료', '조기실패'로 결정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위원회 심의 후 사장의 결정으로 확정하며, '계속 추진'으로 결정시 점검 결과를 사내벤처팀에 통보 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조기완료' 또는 '조기실패'인 경우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을 실시한다.

#### 제22조(최종평가)

- ① 사내벤처팀은 협약기간 종료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담조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는 최종보고서 접수 후, 평가위원회를 과제의 유형 및 내용에 따라 내부 임직원 및 관련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평가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0.12.30>
- 1. 시제품 제작 과정 및 결과물
- 2. 사업목표달성 여부 및 마케팅 활동 현황
- 3. 시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현황 및 매출액 등 성과
- 4.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④ 평가결과는 사내벤처팀의 의지 및 수행성과등을 고려하여 '독립분사', '사내사업화', '단순 완료', '실패'로 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며, 사장의 결정으로 확정한다.
- ⑤ 공사는 최종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독립분사하는 경우, 퇴직 또는 휴직으로 처리하고 퇴직 처리 시에는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며, 퇴직 또는 휴직 처리 후 3년 이내에 공사 복귀를 원할 경우 복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단, 3년 이내에 공사로 복귀하게 되면 창업활동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 2. 사내사업화하는 경우, 사내벤처팀 구성원의 원소속복귀를 원칙으로 하나 원하는 경우, 신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3. 완료 또는 실패의 경우, 사내벤처팀 구성원의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원소속복귀 또는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내부 상황 등으로 인하여 원소속복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에 상응 하는 부서로 발령 조치한다. 단, 사업실적 부진이 업무 태만 혹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으로 발생했을 경우 공사는 해당 창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 ⑦ 사내벤처 영업성과 발생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보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 제5장 사내벤처 전환 및 벤처기업 <본장 신설 2020.12.30>

#### 제23조(사내벤처의 전환)

- ① 공사 및 사내벤처는 사내벤처 협약 종료 후 사내벤처의 성과에 따라 벤처기업 설립을 통한 분사를 제 안할 수 있고, 정규 조직 편성 또는 기존 조직 통합 등 조직 변경이나 폐지를 제안할 수 있다.
- ② 제 1항에 의한 사내벤처의 전환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확정한다. 이 경우 사내벤처팀 참여자는 벤처기업의 직원신분으로 전환하거나 타 부서로 이동할 수 있다.
- ③ 사내벤처가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사가 부담한 비용(지원금, 사용료포함)중 자산화가 가능한 부분은 매각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 제24조(벤처기업과의 협약체결) 공사는 벤처기업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

- 1. 협약의 목적, 취지, 협약의 유효기간
- 2. 투자지분, 창업 준비기간 및 법인설립 등에 관한 사항
- 3. 복무지원 등 공사의 창업지원 사항(벤처사무실, 비품, PC, 전화기 등)
- 4. 경영권 행사, 자료제출, 협의회 운영, 경영성과 배분 등에 관한 사항
- 5. 벤처기업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6. 기타 벤처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25조(벤처기업 창업지원)

- ① 공사는 사내벤처 창업자가 사내벤처 협약 종료 후 사무공간, 시설 및 설비 등의 대여나 공사 보유 기술 및 지식재산권 등을 이용하여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이의 사용을 허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설비 대여, 기술이전 등에 대해서는 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③ 공사는 벤처기업의 초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대여료, 기술이전료 등의 징수를 일정기간동안 유예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 ④ 벤처기업이 흑자 전환 후 손익분기점을 넘는 경우, 협의를 통해 대여료, 기술이전료 징수할 수 있다.
- ⑤ 벤처기업이 공사의 시설, 장비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인수를 희망할 시 공사는 심의위원회 의결 후 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 제6장 투자 및 회수 <본장 신설 2020.12.30>

#### 제26조(투자)

- ① 독립분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투자하는 경우, 주식은 30% 미만으로 소유하며 최대출자자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사기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공사는 벤처기업에 단독으로 투자하거나,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투자 방법과 규모는 투자협약서에서 정한다.
- ⑤ 공사는 공인기관의 평가를 거친 공사의 유, 무형 자산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 할 수 있다.

#### 제27조(지분 투자 및 회수)

- ① 공사는 안정적 지분 회수를 위해 전환사채 혹은 상환전환우선주로 지분투자 할 수 있다.
- ② 분사한 벤처기업과 투자 협약체결 시 공사의 지분 회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

도록 하며, 이후 외부 투자자가 투자 계약 체결 시 공사의 지분을 합리적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은 노력하도록 한다.

- ③ 공사의 지분 회수와 관리를 위해 분사한 벤처기업 이사회에 공사가 선임한 외부 투자 전문가를 등이사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분을 보유한 벤처기업이 업황의 변화로 실적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는 신속하게 지분을 회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28조(벤처기업의 운영실적 보고) ① 공사가 지분 혹은 사용료 징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부서에 정기보고하여야 한다.

- 1. 결산에 관한 사항(연간보고)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연간보고)
- 3. 임원 선정에 관한 사항(연간보고)
- 4.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반기보고)
- 5. 중요 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분기보고)
- 6. 기타 중요한 사항(월간보고)
- ② 보고 시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1. 분기보고: 분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 2. 반기보고: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 3. 연간보고: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 4. 수시보고: 담당부서 요구 시

### 제29조(통보사항)

- ① 공사가 투자했거나 사용료 징수가 완료되지 않은 벤처기업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 1. 증자
-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 등
- 3. 중요한 자금의 조달
- 4. 인력 교체, 추가가 발생했거나 불화로 업무의 지장이 큰 경우
- 5. 기타 공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6.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

### 제7장 기타사항

제32조(비밀누설금지 의무) ① 사내벤처팀 및 분사기업의 전·현직 구성원은 재직 및 창업 시 취득한 정보를 공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제8장 보칙

제33조(위임)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부 칙<2018.10.5>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공포2020.12.30>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ব	<b>철수번호</b>				
	예비 사내벤처 신청서							
시키이	소속			직 급				
신청인	성 명			연 락 처				
	사 업 명							
	사업 유형	□제조업 □서비스입			타(	)		
사업 내용	기술 유형	□ 공사보유기술 □ 자기보유기술 □ 연구개발결과 □ 아이디어사업 등 (기술 상세:)						
	주요 내용							
	추진 기간	20	~ 20	)( ¹	견 개월	<u>!</u> )		
세부 내용	1. 사업화 전 2. 수익구조 3. 기대효과 4. 필요한 지	분석						

			7.	접수번호			
	사내벤처 신청서						
시키이	소속			직 급			
신청인	성 명			연 락 처			
	사업 유형	□제조업 □서비스입	□제조업 □서비스업 □전문용역 □기타()				
사업 내용	기술 유형	□공사보유기술 □자기보유기술 □연구개발결과 □아이디어사업등 (기술 상세:)					
	주요 내용						
	추진 기간	20	~ 20	O ( 1	년 개월)		
		사내벤처를 위와	같이 신	청합니다.			
		년 울		일			
신 청 인 (인) (인) (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 요약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자 이력사항 1부							

# 사업계획 요약서

응 모 자	외 명	대표자	소속 직급				
수행방법	① 직접수행 ② 사업 아이디어 제안						
사 업 명							
사업개요	※ 사업목표, 사업범위(내용) 추진전략 등을 요약 정리						
시장분석	※ 사업 시장규모, 경쟁업체 분석, 사업전망을 요약 정리						
기술/제품	※ 주요 보유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						
필요인력	· 수행인력 : ( ) 명 - 사무( ), 기술( ), 외부 인력( )						
소요 예산	억원(2년 협약 기간)						
수익성분석	구분 1년차 매 출 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2년차	3년	차	비고		
응모 동기	※ 응모 동기						

# 사업계획서

- 1. 사업 개요
  - 가. 사업명
  - 나. 사업 목적
  - 다. 추진 동기
  - 라. 예상 성과
  - 마. 소요 기간
  - 바. 참여 인력
  - 사. 소요 예산

### 2. 사업 분석

- 가. 공사 관련성 분석 : 사업 활동으로 인한 공사 경영전략, 정관과의 관련성 등 나. 사업성 분석 : 국내외 기술 현황, 동종업체, 수요처 등 시장 형성 규모 및 안정성, 경쟁시장 등 위험성 분석, 경쟁력 확보 및 성장가능성 분석 등
- 3. 사업 내용
  - 가. 기술 활용 : 공사보유기술 등 활용기술의 명칭, 기술 활용 또는 개발 계획 등(사용기술 내역서 작성)
  - 나. 인력 구성 : 사업 추진 인력 구성(대표자 등 구성원, 외부인력활용) 및 역무 분장 등
  - 다. 제품(서비스) 등 개발: 기술개발계획, 설계, 시제품 제작 등
  - 라. 양산체제 구축 : 생산 규모, 생산방법(공장 확보 또는 위탁생산), 생산 공정 및 소요설비. 자재 조달 등
  - 마. 마케팅 전략: 가격, 유통, 접근성, 판로 확보 등
  - 바. 자금 사용 : 교육, 설비, 기술개발 등 필요 예산 산정(상세내역 작성) 및 자금집행 계획 수립, 법인화(분사) 시 자본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 등
  - 사. 리스크 및 대응 전략: 발생 가능 리스크 및 이에 대한 대책 등
  - 아. 추진 일정 : 개발, 양산화, 법인 설립(분사 준비) 등 활동 기간 내 추진 일정 등

### 4. 사업 목표

가. 수익 목표 : 매출액 등 예상수익 규모(추정손익계산서 작성) 및 발생 시기, 손익분기점 등

- 나. 기여 목표 : 기술 발전·일자리 창출·수출 증진 등 기술·경제적으로 산업에 미치는 효과, 공사 업무 활용 및 개선, 이미지 제고 등
- 5. 공사 지원 요청사항
  - 가. 공사보유기술(특허 등), 시설, 장비 사용 및 기술·법률 등 자문
  - 나. 사업 관련 컨설팅 등 교육 지원
  - 다. 기타 지원 사항
- 6. 참고 사항
  - 가. 각 항목별 내용은 가급적 세부적으로 작성하며 추가 설명을 위한 증빙 자료첨부
  - 나. 작성 시 활동기간을 2개년을 기준으로 작성
  - 다. 가급적 개조식 및 도표로 작성

# 신청자 이력사항

##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원일(연령)	(만 세)	
신청 직위		청팀 대표자 청팀 구성원			
학력	기 간	학교명	학위	전공 및 부전공	
경력	기 간	소 속	직 급	주요 직무	
자 격	취득일자	자 격 명	발행처 및 비고		
창업 또는 희망 사업 관련	기 간	수행기관	주요 내용		
교육 및 활동 경험					
포상 및 징계	일 자	종 류	내용	비 고 징계의 경우, 징계 종료일자 반드시 작성	

# 2.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연구개발 실적

직무(연구개발) 명	수행기관 또는 부서	수행 기간	수행 내용 (과제명)	수행 결과 (실적)
	, ,		( ) " ( )	,

# 3. 외부 참여인력(해당 시 작성)

성 명	연령	소속기관 및 직위	주요경력 및 담당업무	최종학력 및 학위	참여 내용	비 고

# 예비사내벤처 평가표

사업명		제안자				
구분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점수		
공사관련성 (10점)	공사 경영전략과의 관련성	공사 기업이념, 경영전략 및 정관과 의 관련성	10			
창의성 (10점)	사업의 독창성	사업 목표 및 계획의 독창성	10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 목표 및 계획의 실현가능성	10			
사업성	시장 확보 여부	적정 규모의 시장 형성 및 안정성	5			
(35점)	사업 경쟁력	사업 계획의 시장 점유가능성 및 경쟁 우위 여부	10			
	사업 전망	사업 유지 및 성장 가능성	10			
기술성	신속 상품화	사업화(상품화 가능성)	10			
(15점)	진입장벽 여부	활용 기술의 특허 보유 및 우위 확보 여부	5			
	수행 인력의 적격성	대표자의 책임의식, 도전의식 및 리더쉽 등 리더 자질 보유 여부	5			
		구성원의 책임의식, 도전의식 및 성실성	5			
인력구성 (20점)	수행 인력의 전문성	대표자의 창업 또는 희망 사업 관 런 경험 및 지식 정도	5			
(30점)		구성원의 창업 또는 희망 사업 관 런 경험 및 지식 정도	5			
	조직 구성의 적정성	수행 조직 규모 및 구성의 적정성	5			
		역할 분담의 적정성 및 명확성	5			
	100					
평가결과	□ 적정 □ 부적정					
종합 의견						
상기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함.						
		(인)				

# 사내벤처 평가표

사업명		제안자					
구분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점 수			
타당성 (20점)	사업의 명확성 및 구체성	사업 목표 및 계획의 명확성 및 구체성	20				
, ,	사업 규모의 적정성	개발, 시설투자, 양산화 등 사업 규모 설정의 적정성	10				
	자금 집행 계획의 적정성	예산 산정 근거의 명확성	10				
경제성 (45점)		추정손익의 적정성	8				
,	지원 요청의 적정성	예산 등 공사 지원 요청 내용의 적정성	7				
	시천 표정의 작성성	예산 등 공사 지원 요청 규모의 적정성	10				
	사업의 수익성	사업 기간 내 또는 분사 후 수익 발생 가능성	10				
	향후 투자 및 회수 가능성	분사 설립 후 투자 및 회수 가능성	10				
기대효과 (35점)	관련 산업 파급효과 및 공공성	관련 산업 발전 촉진 가능성 (융합 발전, 수출 증진 등)	5				
		일자리 창출, 사회 복지 증진 등 공공성	5				
		업무 활용 및 개선, 이미지 제고 등 공사 기여도	5				
	총	엄	100				
평가결과	□ 적정 □ 투	<sup>1</sup> 적정					
종합 의견							
		평가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사내벤처 협약 대표자 신청서							
신청	소속	직 급					
인	성 명	연 락 처					
	사업 유형	□제조업 □서비스업 □전문용역 □기타( )					
사업 내용	사 업 명						
	사업 기간	20~ 20( 년 개월)					
	사내벤처 협약 관련 대표 신청자로서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2. 운 <sup>약</sup> 3. 신 <sup>7</sup>	부서류 업계획서 1부 경자금 조달계획 청자 이력사항 1 격증 사본 각 1 <sup>1</sup>	부					

### 【별표 제3-2호】<신설 2020.12.30>

# 협약 사업계획서

### 1. 사업 개요

- 가. 사업명
- 나. 사업 목적
- 다. 추진 동기
- 라. 예상 성과
- 마. 소요 기간
- 바. 참여 인력
- 사. 소요 예산

### 2. 사업 분석

가. 공사 관련성 분석 : 사업 활동으로 인한 공사 경영전략, 정관과의 관련성 등 나. 사업성 분석 : 국내외 기술 현황, 동종업체, 수요처 등 시장 형성 규모 및 안정성, 경쟁시장 등 위험성 분석, 경쟁력 확보 및 성장 가능성 분석 등

### 3. 사업 내용

가. 기술 활용 : 공사보유기술 등 활용기술의 명칭, 기술 활용 또는 개발 계획 등(사용기술내역서 작성)

나. 인력 구성 : 사업 추진 인력 구성(대표자 등 구성원, 외부인력활용) 및 역무분장 등

- 다. 제품(서비스) 등 개발: 기술개발계획, 설계, 시제품 제작 등
- 라. 양산체제 구축 : 생산 규모, 생산방법(공장 확보 또는 위탁생산), 생산 공정 및 소요설비, 자재 조달 등
- 마. 마케팅 전략: 가격, 유통, 접근성, 판로 확보 등
- 바. 자금 사용 : 교육, 설비, 기술개발 등 필요 예산 산정(상세내역 작성) 및 자금집행 계획 수립, 법인화(분사) 시 자본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 등
- 사. 리스크 및 대응 전략 : 발생 가능 리스크 및 이에 대한 대책 등
- 아. 추진 일정 : 개발, 양산화, 법인 설립(분사 준비) 등 활동기간 내 추진 일정 등

### 4. 사업 목표

가. 수익 목표 : 매출액 등 예상수익 규모(추정손익계산서 작성) 및 발생 시기, 손익분기점 등

나. 기여 목표 : 기술 발전·일자리 창출·수출 증진 등 기술·경제적으로 산업에 미치는

## 효과, 공사 업무 활용 및 개선, 이미지 제고 등

- 5. 공사 지원 요청사항
  - 가. 공사보유기술(특허 등), 시설, 장비 사용 및 기술·법률 등 자문
  - 나. 사업 관련 컨설팅 등 교육 지원
  - 다. 기타 지원 사항
- 6. 참고 사항
  - 가. 각 항목별 내용은 가급적 세부적으로 작성하며 추가 설명을 위한 증빙 자료 첨부
  - 나. 작성 시 활동기간을 2개년을 기준으로 작성
  - 다. 가급적 개조식 및 도표로 작성

# 운영자금 조달계획서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용 도	내 용	금 액 (천원)	조달방법	기조달액	추가조달액	
	비용		자기자금			
	보증보험		금융차입			
운 전	기타		창업자금			
자 금			기타			
	합 계		합 계			
	मो 8					
운전자금 산출근거	보증보험					
조달계획						
산출근거						

작성일:20 . . .

작 성 자 : (인)

# 신청자 이력사항

## 1. 인적사항

소속			직 급		
성 명			생년원일(연령)	(만 세)	
신청 직위	□공모신청팀 대. □공모신청팀 구				
	기 간	학 교 명	학위	전공 및 부전공	
학력					
	기 간	소 속	직 급	주요 직무	
경력					
	취득일자	자 격 명	발행처 및 비고		
자 격					
창업 또는	기 간	수행기관	주	요 내용	
희망 사업					
관련 교육					
및 활동경험					
三 已 0 / 0 日	일 자	종 류	내 용	비고	
포상 및		.,	,, 5	징계의 경우,	
징계				징계 종료일자	
				반드시 작성	

## 2.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연구개발 실적

직무(연구개발) 명	수행기관 또는 부서	수행 기간	수행 내용 (과제명)	수행 결과 (실적)

# 3. 외부 참여인력(해당 시 작성)

성 명	연령	소속기관 및 직위	주요경력 및 담당업무	최종학력 및 학위	참여 내용	비 고

## 사내벤처 업무협약서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한다.)와 사내벤처 구성원 ○○○ ,○○○, ○○○는 공사 사내벤처제도 운영을 통한 공사 비전 달성 및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내벤처 제도 도입·운영을 통해 사내 혁신·벤처문화 활성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공사의 경영성과 창출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력)

공사와 사내벤처 구성원은 공사의 발전을 위해 사업화 및 체질 혁신 등을 이끌어낸다는 사내벤처의 도입 취지를 인식하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간 신의와 성실로서 적극 협력한다.

### 제3조(협약 기간)

협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공사와 사내벤처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협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 및 투자금 회수)

협약기간중 본 공사가 지원하는 지원금과 투자금에 대해서는 분사 전 매출 실현 시부 터 일부 혹은 전부 상호 협의를 회수 가능하며, 분사 시 영업이익액을 고려해 우선적 회수가 가능하다.

## 제5조(외부인 팀원 참여 시 적용 범위)

협약기간중 외부인이 사내벤처에 활동할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대상이 아니며, 매출이 발생해 포상금이 주어질 경우 내부 사내벤처팀 대표에게 지급되며, 해당 금액의 분할 은 팀 내에서 그 기여분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분쟁은 본 공 사와 아무런 관련도,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제6조(외부 투자 유치 관련 적용 범위)

협약기간중 외부인이나 외부투자기관에 의해 투자가 진행될 경우, 그 시점, 금액, 회사가치 등에 대해 본 공사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본 공사가 지원한 지원금과 투자금에 대해 먼저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만약 이를 수행함이 어려울 경우, 외부투자자가 본 공사의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도록 구성원과 투자자 간 투자 합의를 해야 한다.

## 제7조(성실 이행)

공사와 사내벤처 구성원은 사내벤처 운영지침에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 제8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사내벤처 구성원 간 별도 협의로 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공사와 사내벤처 구성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20 년 월 일

한국가스기술공사		사내벤처	
사장	(6 <u>1</u> )	리더	(인)
^\r28	(인)	구성원	(인)
		구성원	(인)
		구성원	(인)
		구성원	(인)

# 사내벤처 분기별 성과 평가표

사업명		리더명							
심사요	-건 주요 평가 착안사항		A	В	С	D	F		
		-계획과 결과의 일치 여부			8	6	4	2	1
~		-공사 가치체계 및 전략체계와의 정합 성			8	6	4	2	1
추진 프로 평가(40		-사규 및 관련 지침 준수 여부			8	6	4	2	1
	·	-환경변화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8	6	4	2	1
		-추진경과 보고의 적시성			8	6	4	2	1
		-추진에 따른 공사 업무 개선도			10	7	5	3	1
추진 /	성과	-공사의 이미지 제고 효과			10	7	5	3	1
평기	<b>}</b>	-공사 혁신마인드 확산 기여도			10	7	5	3	1
(50점	<b>3</b> )	-공사 본업과의 추후 연계			10	7	5	3	1
		-예산절감 기여도			10	7	5	3	1
구성원 평가		-구성원의 참여도			5	4	3	2	1
(10점	Ħ)	-구성원의 혁신역량			5	4	3	2	1
평가결	별과	총 점							
상기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길					
심의위원 (인)									

# 사내벤처 최종 성과 평가표

사업명	리더명					
심사요건	주요 평가 착안사항	A	В	С	D	F
	-수익 창출 여부	8	6	4	2	1
	-상품화 실현 정도	8	6	4	2	1
사업화 성과	-구매 고객 확보 정도	8	6	4	2	1
평가(40점)	-장기 매출 실현 가능성	8	6	4	2	1
	-사업 관련 밸류체인상 안정적 공급 체 계 확보 정도		6	4	2	1
	-독점적 기술 확보 여부(시장 진입장벽 함께 고려)	8	6	4	2	1
경쟁력 성과	- 타 경쟁사 대비 차별성 구현 정도 (구매 고객 평가 반영)	8	6	4	2	1
평가	-특허 획득 정도 (기술 개발력)	8	6	4	2	1
(40점)	-외부 기관 인증/어워드 확보 (국내외 기관 포함)	8	6	4	2	1
	-투자 매력도(내부, 외부 전문가 의견 포함)	8	6	4	2	1
지속성장가능 성 평가	-안정적 사업 자금 확보 수준	10	7	4	2	1
(20점)	-구성원의 사업 성공 확신 정도	10	7	4	2	1
평가결과	총 점					

상기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심의위원 (인)

사내벤처 협약기간 변경 신청서								
ام احا ما	소속	직 급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사 업	명							
협약기	7] 7 <u>]</u> -	당 초 20~ 20 (년 개월)						
<b>υ</b> Γ /	12	변 경 20 ~ 20 ( 년 개월)						
협약 기간 변경 사유								
사내벤	사내벤처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내벤처 협약기간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필요시 자료 첨부								

# 사업제안 철회서

제안제목					
	소속	직위/직급	성명		
제안자					
제출일		연락처			
철회사유					
위와 같이 사내	벤처 운영규정에 제25조	에 따라 사업제안 철회	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 보안각서

본인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벤처 관련 업무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1. 본인은 한국가스기술공사 벤처 관련 업무에 참여함에 있어 주관부서의 보안관련 지시사항 등의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 2. 벤처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기간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한국가스기술공사의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한 처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